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70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 조은희·이양수·서일준

김희정 • 서천호 • 박정하

주진우 • 박충권 • 조승환

이성권 • 유상범 • 강승규

최보윤 • 이달희 • 송언석

고동진 • 김민전 • 서명옥

배준영 · 조정훈 · 이종욱

이만희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관리와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핵심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비리 논란, 선거관리 부실, 허위병가 등 방만한 조직운영 등의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선관위 내부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경력채용 전수점 검 결과를 보면, 면접점수·평가표 조작, 짬짬이 내부위원 채점 등 채 용규정 위반이 무려 878건에 이를 정도로 채용비리 온상으로 밝혀지 며 구직 중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감독을 실질적으로 총괄·지휘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재하여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내부 자정작용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 불거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의 핵심 또한 전 사무총장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며, 감시 사각지대에서 사무처 병폐가 확산됐음.

현재 선관위 내에서 동일한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비 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는만큼, 사무총 장 또한 공개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9069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할 것임. 법률 제 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을 "대통령·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을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을 각각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 장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1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			
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			
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u>대통령·대통령당선</u>	<u>대통령·대통령당선</u>		
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	인ㆍ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		
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관리위원회 위원장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③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			
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			

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 권위원회 위원장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 국세청장 · 검찰 총장 · 경찰청장 · 합동참모의장 • 한국은행 총재 •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 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 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 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 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생 로)
 - ② 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 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

<u>국가인</u>
권위원회 위원장・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총장
<u>대통령·대통령당</u>
선인 • 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
,
④ (현행과 같음)
세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청문경과보고서를 <u>대통령·대</u> 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 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 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 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 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u>대동영·대</u>
통령당선인 · 대법원장 또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u>ਪੋ</u>
통령 • 대통령당선인 • 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u> 장</u>